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3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 제안이유

-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

III .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 나.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안 제11조)
- 다.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방보조금법과 달리 동 조례에는 누락된 부정수급 관련 조문을 보완하며, 동 조례의 별지에서 정하도록 한 서식을 규칙으로 하향하고자 제출됨.

2. 지방보조금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내역

- 정부는 지방행정의 다양화·복잡화와 함께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이 증가한 반면, 지방보조금 관련 제도는 조례에 위임된 범위가 넓고 법령상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이후 정부는 2023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 도입,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요청·보호·과기 기준 마련,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일부개정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당초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었으나 지방보조금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2년 10월 17일자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음.

- 이후 2023년 5월 22일자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의 의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2023년 12월 29일자로 도시안전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23년 4월 11일에 있었던 지방보조금법의 개정 사항이 동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 전부 개정 당시에 누락되었던 일부 조항을 보완하며, 어색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정비¹⁾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임.

< 지방보조금법 제정 이후 동 조례 주요 개정 내역 >

개정일자	주요내용
2021.01.12.	지방보조금법 제정
2022.10.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23.04.11.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 도입 -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요청·보호·파기 기준 마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 개선
2023.05.2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추가 -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의 의회 제출 의무 신설
2023.12.2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 도시안전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50%→100%)

3. 주요내용 검토

가.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보완(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벌칙

1)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20조제3항 각 호 중에 사용된 콜론(:)의 띄어쓰기, 제23조제5항, 제35조에서 어색한 문구를 정비함.

조항에 법 제39조를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 다. (생략)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생략)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3. (현행과 같음)

- 동 조례는 전부개정 당시 서울시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을 지방보조금법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내용의 무단 변경, 보조사업의 무단 인계, 중단, 폐지, 자료보관의무 위반, 보조사업수행 중지명령 위반,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칙규정(법 제39조)이 누락되어 있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동 조례의 전부개정이 2022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입법상의 보완 조치가 과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제출 별지 서식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 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는 동 조례의 별지 서식 1호부터 4호²⁾까지를 각각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제1호 중요재산 현황, 제2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3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제4호 포상금 지급 신청서

현행	개정안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u>별지 제1호서식</u> 에 따른다.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u> ---.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u>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u>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②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u>법 제25조와 영 제14조</u>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u>별지 제4호서식</u>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 <u>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u> -----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 현재 서울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출 서식 중에 ▶중요재산 현황,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분산된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조례보다 개정이 용이한 시행규칙으로 서식 관련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법령 개정 때 서식의 변경시 법령과의 정합성을 보다 용이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반적으로 조례는 규율할 대상과 내용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시행

규칙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 사항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음.

다. 조문내용 현행화(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 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는 2023년 4월 11일자로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 조항을 이동하는 등 조문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임.
- 먼저 안 제23조 및 제31조는 지방보조금법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각각 같은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u>법 제25조와 영 제14조</u>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u>별지 제4호서식</u>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법 제25조</u>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 <u>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u>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② ----- ----- <u>법 제36조의3</u>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필요한</u> -----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u>법 제26조제2항</u>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의2. (생략) 4. <u>법 제25조</u>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 8. (생략) ② (생략)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u>법 제26조제2항</u>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의2. (생략) 4. <u>법 제25조</u>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 8. (생략) ② (생략)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u>법 제36조의3</u> ----- -----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그리고 안 제24조는 지방보조금법 제30조(명단 등의 공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제32조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 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u><신설></u> 1. (생략) 2.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 ----- ----- ----- -----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법 제32조제3항 -----

- 또한 안 제26조는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및 교부 제한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진 점과 그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5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및 교부 제한의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현행화는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서울시는 2023년 4월에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2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이를 반영하고 있는바, 적시에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